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

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10. 2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9월 13일

나. 발 의 자: 이순우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9월 23일

라. 상정일자: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9. 3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순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내용이나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(안 제2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0조제4항은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신설하여 규정함.
- 검토 결과
 - 우리 구는 해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, 주민만족도 평가, 현장 평가, 실적서류 평가로 용역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음.
 - 주민만족도 평가의 경우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1:1 대면조사를 조사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, 폐기물 수거시 잔재 쓰레기 발생, 과도한 소음 및 악취발생 등이 주요 주민 불편사항으로 평가됨.
 - 현장평가는 연구원 1명과 시민대표 2명(3개조) 현장 평가단으로 편성하여 현장의 청결상태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작업자 위생안전 관리분야에서 샤워장·화장실 부족이 개선 사항으로 지적됨.
 - 마지막으로 실적 서류평가는 현장 검증을 병행한 평가로 폐기물 수거시 인력 편성 운영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.
 - 이와 같이 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업무수행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만족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순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9. .

발 의 자: 이순우, 유승용, 차인영
전승관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내용이나 대행실적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(안 제20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,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0조(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구청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,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u>